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883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16호(2019.07.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82호(2019.08.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365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1호(2020.02.0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177호(2020.05.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28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4호(2021.02.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01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63호(2021.04.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434호(2021.08.1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66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661호(2021.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2-231호(2022.05.2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391호(2022.09.2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414호(2022.10.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475호(2022.12.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3-109호(2023.03.3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3-116호(2023.04.06.), 제2024-38호(2024.01.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4-173호(2024.04.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5. 2. ~ 2024. 5. 16.(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4층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83)

다. 공람 내용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1,135.8	-	791,135.8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 서울 서북권의 수색 부도심으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서북권 중심축의 전략적 거점지 조성 및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를 구축과 친환경 복합 도심형 주거단지 건설을 바탕으로 미래도시의 적합한 주거단지 조성과 다양한 친환경 어메니티 체험이 가능한 매력있는 도시로 조성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합계		791,135.8	-	791,135.8	100.0	
주거 용지	소계	544,396.4	-	544,396.4	69.0	
	공동주택	475,688.8	-	475,688.8	60.0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33,853.4	-	33,853.4	4.3	
	주택용지	0.0	-	0.0	0.1	
	유치원	2,273.8	-	2,273.8	0.3	
	종교용지	6,873.6	-	6,873.6	0.9	
	존치	12,021.8	-	12,021.8	1.7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46,739.4	-	246,739.4	31.0	
	도로	110,272.8	감) 124.6	110,272.8	13.9	
	보행자도로	5,554.9	-	5,554.9	0.7	
	공원	35,370.3	감) 2,236.5	33,133.8	4.2	
	녹지	23,017.8	증) 2,361.1	25,378.9	3.2	
	광장	1,001.0	-	1,001.0	0.1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전기공급설비	【1.4km중0.73km】	-	【1.4km중0.73km】	-	수색~향동
	변전소	542.0	-	542.0	0.1	건축물내부(지하)에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교	57,287.7	-	57,287.7	7.1	
	사회복지시설	4,292.5	-	4,292.5	0.5	
	도서관	3,801.8	-	3,801.8	0.5	
	문화시설	1,631.6	-	1,631.6	0.2	
	체육시설	(4,023.0)	-	(4,023.0)	(0.5)	복합용지내 복합화

※ 【 】 는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

※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13,731호 / 37,422인 (변경없음)

구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731	-	13,731	37,422	-	37,422	2.7인/세대 (2020서울시도시 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촉진구역	소계	12,952	-	12,952	24,972	-	24,972	
	40㎡ 이하	1,088	-	1,088	2,938	-	2,938	
	40~50㎡	990	-	990	2,673	-	2,673	
	50~60㎡	3,689	-	3,689	9,961	-	9,961	
	60~85㎡	5,910	-	5,910	15,957	-	15,957	
	85㎡ 초과	1,275	-	1,275	3,443	-	3,443	
존치관리구역	공동주택	533	-	533	1,440	-	1,440	2.7인/세대
존치지역		246	-	246	1,010	-	1,010	-

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교육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건 폐율	용 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증산동 212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30호 (75.02.21)	증산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일대	14,924.0	-	14,924.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50호 (82.02.03)	증산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일대	12,681.3	-	12,681.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제2008- 173호	연서중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수색동 129일대	18,403.4 (316.0)	-	18,403.4 (316.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9.01.10)	수색초

※ () 는 구역내 면적

(2)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 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8-10대 일대	1,358.0	-	1,358.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88-22대 일대	743.0	-	74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57-24대 일대	576.3	-	576.3	서울시고시 제2010-449호	
기정	5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4-2대일대	269.6	-	269.6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47.5	-	447.5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98.1	-	898.1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3)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수색동 326-16대 일대	762.0	-	762.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공공청사	동사무소	수색동 363-12대 일대	950.0	-	950.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4	공공청사	동사무소	증산동 169-30대 일대	810.0	-	810.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5	공공청사	경찰파출소	증산동 169-11대 일대	695.0	-	695.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6	공공청사	-	수색동 361-6대 일대	750.0	-	750.0	서고 제2016-134호	

(4)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문화시설	수색동 358-10대 일대	1,631.6	-	1,631.6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5) 도서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도서관	수색동 21-1 일대	3,801.8	-	3,801.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시설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근린공원		-	구산동 산136-5 일대	173,845.1 (지구내3, 152.4)	-	173,845.1 (지구내3, 152.4)	
봉산도시자연공원		-	수색동 산17-임 일대	2,236.5	감) 2,236.5	-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1개소	18,194.0	-	18,194.0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어린이공원		3개소	5,038.1	-	5,038.1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	2,033.1	
	문화공원		1개소	4,445.3	-	4,445.3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445.3	-	4,445.3	
	소공원		2개소	4,497.0	-	4,497.0	
		1	수색동 25-15대 일대	925.5	-	925.5	
2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	3,571.5		
녹지	완충녹지		1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녹지		4개소	17,416.2	-	17,416.2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137.2	-	6,137.2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275.0	-	5,275.0	
	경관녹지		1개소	2,586.5	-	2,586.5	
		5	수색동 321임 일대	2,586.5	-	2,586.5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도시계획시설 폐지 2,236.5㎡ → 2,236.5㎡ : 감 43.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 오기정정 및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1-7 교통계획)에 명시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1-8 경관계획)에 명시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고		
								층수	최고층수(m)					
기정	21	수색동	341	7.0	60%	244.0%이하		15.1층	20층 (65m이하)	3	전면개발	수색13촉진		
기정	22	수색동	115	6.6	50,60%	268.1%이하		19.9층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6촉진		
기정	23	수색동	412	3.1	60%	249.95%이하		17.9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7촉진		
기정	24	수색동	16	3.0	60%	263.9%이하		18.7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8촉진		
기정	25	수색동	30	3.6	9-1	50%	9-1	275.0%이하	25.4층	9-1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9촉진
					9-2	60%	9-2	442.9%이하		9-2	22층 (85m이하)			
기정	29	수색동	361	6.1	60%	257.63%이하		18.5층	25층 (80m이하)	2	전면개발	수색4촉진		
기정	30	증산동	216	7.9	2-1	50%	2-1	247.7%이하	22층	2-1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증산2촉진
					2-2		2-2			2-2				
					2-3		2-3		-	2-3	25층 (90m이하)			
기정	31	증산동	205	17.2	60%	247.0%이하		18.1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4촉진		
기정	32	증산동	157	11.3	60%	263.7%이하		19.7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5촉진		

(2)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수색동	366-11	0.4	60%	400%이하	24층(104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2	수색동	106-1	0.4	60%	78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3	수색동	102-20	0.3	60%	75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6	수색동	32-13	0.4	60%	760%이하	28층(11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7	수색동	369-3	0.4	60%	350%이하	33층(130m이하)	2	복합용도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	791,135.8	-	791,135.8	
재정비 촉진 구역	합계		-	682,857.6	-	682,857.6	
	주택 재개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1-10일대	61,519.3	-	61,519.3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15-5일대	65,977.0	-	65,977.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412일대	31,432.3	-	31,432.3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7-28일대	29,884.0	-	29,884.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0-2일대	36,341.2	-	36,341.2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41-6일대	69,511.4	-	69,511.4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216-10일대	78,727.2	-	78,727.2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205-33일대	172,932.0	-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157-34일대	112,804.2	-	112,804.2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6-11일대	4,422.0	-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7-6일대	5,026.0	-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06-1일대	3,704.0	-	3,704.0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102-20일대	2,961.0	-	2,961.0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2-13일대	3,163.0	-	3,163.0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369-3일대	4,453.0	-	4,453.0	
존치 관리 구역	합계		-	108,278.2	-	108,278.2	
	지구단위 계획	수색1존치관리구역	수색동160일대	52,343.0	-	52,343.0	
	존치	존치	-	55,935.2	-	55,935.2	존치건축물

※ 존치건축물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APT, 문영1차APT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1) 수색1~1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2)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9,511.4	-	69,511.4	100.0	
일반 주거지역	제1종	4,823.0	-	4,823.0	7.0	
	제2종(7층)	34,916.6	-	34,916.6	50.2	
	제2종	29,771.8	-	29,771.8	42.8	

- (3)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4) 수색1존치관리구역 (변경없음)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수색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0이하	-/24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기정	수색3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7.63이하	18.50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1	268.10이하	19.90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수색7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95이하	17.90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0이하	18.70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5	275.00이하	25.40이하/30이하	92이하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6.7	442.90이하	-/22이하	85이하	
기정	수색1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00이하	-/22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1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0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색13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4.00이하	15.10이하/20이하	65이하	
기정	증산2 촉진구역	2-1 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	247.70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0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증산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00이하	18.10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0이하	19.70이하/30이하	92이하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1) 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소계	246,739.4	-	246,739.4	
도로	110,272.8	감) 124.6	110,148.2	
보행자도로	5,554.9	-	5,554.9	
공원	35,370.3	감) 2,236.5	33,133.8	봉산근린공원 포함
녹지	23,017.8	증) 2,361.1	25,378.9	8개소
광장	1,001.0	-	1,001.0	2개소
전기공급설비	【1.4km중0.73km】	-	【1.4km중0.73km】	수색~향동
변전소	542.0	-	542.0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교	57,282.7	-	57,282.7	4개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사회복지시설	4,292.5	-	4,292.5	6개소
도 서 관	3,801.8	-	3,801.8	1개소
문화시설	1,631.6	-	1,631.6	1개소
체육시설	(4,023.0)	-	(4,023.0)	복합용지내 복합화

※ 【 】 는 중복결정 또는 이중시설

※ () 는 복합용지 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

(2)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 면적(㎡)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분담률(%) B/A
기정	합 계	682,857.6	184,688.1	42,340.4	61,768.1	-	88,886.0	13.0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	556.0	15.0
기정	수색4	61,519.3	13,447.5	2,099.5	7,051.0	-	7,666.0	12.4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	454.0	15.3
기정	수색6	65,977.0	18,203.0	5,222.0	6,099.0	-	6,882.0	10.4
기정	수색7	31,432.3	6,063.1	1,963.0	-	-	4,100.1	13.0
기정	수색8	29,884.0	9,072.0	2,638.0	2,727.0	-	3,707.0	12.4
기정	수색9	36,341.2	9,114.8	1,023.6	1,729.0	-	6,362.2	17.5
기정	수색11	3,163.0	315.0	-	-	-	315.0	9.95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	710.0	15.9
기정	수색13	69,511.4	14,748.3	2,626.0	7,698.0	-	9,361.7	13.4
기정	증산2	78,727.2	23,155.4	7,057.8	7,699.6	-	8,398.0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804.2	31,732.0	6,420.5	10,574.5	-	14,737.0	13.0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전용면적 40㎡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전용면적 85㎡	계
기정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	-	-	-	-
기정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	-	-	-	-
기정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	-	-	-	-
기정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85	83	35	-	203
기정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	-	-	-	-
기정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88	97	23	-	208
기정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49	49	18	-	116
기정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40	40	19	-	99
기정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57	54	20	4	135
기정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	-	-	-	-
기정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	-	-	-	-
기정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140	112	48	-	300
기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114	99	24	-	237
기정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228	228	139	-	595
기정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134	106	63	-	303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추진위원회)	이주시기 (관리처분인가 예정)	입주시기		
기정	1단계	2008년	2015년	2019년	수색4촉진구역	(이주)
			2016년~2017년	2020년~2021년	수색6,9, 증산2촉진구역	(감정평가)
		2009년~2013년		2018년	2022년	수색7촉진구역
			2021년		증산5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기정	2단계	2008년	2018년 이후	2022년 이후	수색8, 13촉진구역	(조합설립)
기정	3단계	2014년 이후	2018년 이후	-	증산4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주1) 단계별 추진계획은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가능

주2)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3) 구청장은 전세수요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역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조정가능

하)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1-18 기타계획)에 명시

거)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1-19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1-20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더)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1) 수색1~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번지 일원	69,511.4	-	69,511.4	-

(나) 정비계획 (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9,511.4	-	69,511.4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4,748.3	-	14,748.3	20.9	
	도 로	6,632.1	감) 124.6	6,507.5	9.4	
	공 원	2,236.5	감) 2,236.5	-	-	
	녹 지	2,586.5	증) 2,361.1	4,947.6	6.9	
	사회복지시설	1,345.6	-	1,345.6	1.8	
	문화시설	1,631.6	-	1,631.6	2.4	
	학 교	316.0	-	316.0	0.4	
택지 (획지)	소 계	54,763.1	-	54,763.1	79.1	
	13-1	54,763.1	-	54,763.1	79.1	공동주택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변경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 일원	수색동 111-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4 (256)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1	중로2-461	•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폭원 : 26m → 24m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일부구간 폭원 조정

■ 공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	공원	봉산도시 자연공원	수색동 산17-1 일대	2,236.5	감) 2,236.5	-	서고제513호 (83.9.29)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봉산도시 자연공원	• 도시계획시설 폐지 2,236.5㎡ → 0㎡ : 감 2,236.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 오기 정정 및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수색동 321임 일대	2,586.5	증) 124.6	2,711.1	서고제2016-165호	
신설	A	녹지	경관 녹지	수색동 산13-14임 일대	-	증) 836.3	836.3	-	
신설	B	녹지	경관 녹지	수색동 산17-6임 일대	-	증) 1,400.2	1,400.2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2,586.5㎡ → 2,711.1㎡ : 증) 124.6㎡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면적 증가
A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836.3㎡ : 증) 836.3㎡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B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1,400.2㎡ : 증) 1,400.2㎡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47.5	-	447.5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98.1	-	898.1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문화시설	수색동 358-10대 일대	1,631.6	-	1,631.6		

■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수색동 129일대	18,403.4 (316.0)	-	18,403.4 (316.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9.01.10)	수색초

※ () 는 구역내 면적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계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69,511.4	계	54,763.1	수색동 341-6번지	272	-	-	272	-	
			13-1	54,763.1							

■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69,511.4	계	54,763.1	수색동 341-6 133,621.9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44.0% 이하 15.1/20 (65m이하)					
			13-1	54,763.1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486	(100.0%)	-		1,486	(100.0%)	
		전용면적 40㎡이하		219	(14.7%)	-		219	(14.7%)	
		전용면적 40~50㎡		177	(11.9%)	-		177	(11.9%)	
		전용면적 50~60㎡		484	(32.6%)	-		484	(32.6%)	
		전용면적 60~85㎡		506	(34.1%)	-		506	(34.1%)	
		전용면적 85㎡초과		100	(6.7%)	-		100	(6.7%)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준수)								
기정	대지내 공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여야 함.								
기정	대지내 공지	●공동주택 대지 중앙부 폭 33.5m 건축한계선 부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폐지되는 연결녹지 부지)								

④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획지면적 (㎡)	연면적 (㎡)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기정	계	54,763.1	20,180.55	계	300	20.1%(100%)
	13-1	54,763.1	20,180.55	전용면적 40㎡이하	140	9.4%(46.7%)
				전용면적 40~50㎡	112	7.5%(37.3%)
				전용면적 50~60㎡	48	3.2%(16.0%)
	적용 기준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건설할 것 • 용도지역 상황에 따른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초과 40%이하로 건립				

(3) 증산2~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4) 수색1 존치관리구역 (변경없음)

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1,135.8	-	791,135.8	서고 제2008-173호 (2008.05.22.)

(2)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1,135.8	-	791,135.8	100.0	
소계		776,434.8	-	776,434.8	98.1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985.7	-	83,985.7	10.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765.5	-	149,765.5	19.0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623.1	-	414,623.1	52.4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83.1	-	74,583.1	9.4
	준주거지역		53,477.4	-	53,477.4	6.7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0	1.9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① 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종점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 도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 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442	21	집분산 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산 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점				
기정	중로	1	445	21	집산 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 21	집산 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 선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2002-262호 (02.06.27)	
변경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4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21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9	15	국지 도로	132	증산동 219-28대 일원	증산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국지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수색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국지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15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 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수색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6~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 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 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4	4.5	특수 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8	국지 도로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1	중로2-461	•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폭원 : 26m → 24m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일부구간 폭원 조정

(나) 공간시설 (변경)

① 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봉산근린 공원	구산동 산136-5 일대	173,845.1 (지구내3, 152.4)	-	173,845.1 (지구내3, 152.4)	서고제513호 (83.09.29)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어린이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3.1	-	2,033.1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문화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445.3	-	4,445.3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25.5	-	925.5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일대	3,571.5	-	3,571.5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폐지	-	봉산 도시자연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2,236.5	감)2,236.5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봉산도시 자연공원	• 도시계획시설 폐지 2,236.5㎡ → 0㎡ : 감 2,236.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 오기 정정 및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② 녹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완충녹지	1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녹지	4개소		17,416.2	-	17,416.2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137.2	-	6,137.2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275.0	-	5,275.0		
	경관녹지	3개소		2,586.5	증) 2,361.1	4,947.6		
		5	수색동 321임 일대	2,586.5	증 124.6	2,711.1		
		A	수색동 산13-14임 일대	-	증) 836.3	836.3		
		B	수색동 산17-6임 일대	-	증) 1,400.2	1,400.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2,586.5㎡ → 2,711.1㎡ : 증) 124.6㎡	•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면적 증가
A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836.3㎡ : 증) 836.3㎡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B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 신설 0㎡ → 1,400.2㎡ : 증) 1,400.2㎡	• 공원 시설의 세분 “도시자연공원” 폐지로 기존 봉산도시자연공원이었던 해당 필지를 경관녹지로 신설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③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2	광장	수색동 122-2 일대	489.0	-	489.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광장	수색동 131-1 일대	631.0	-	631.0	서고 제2008-173호	

(다) 유통 · 공급시설 (변경없음)

①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전기공급 설비	은평구 수색동 18-2	고양시 향동동 142-4	-	L=1,400m	-	서고1992-151호 (92.05.16)	시계외구간 L=670m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①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수색동 326-16대 일대	762.0	-	762.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공공청사	동사무소	수색동 363-12대 일대	950.0	-	950.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4	공공청사	동사무소	증산동 169-30대 일대	810.0	-	810.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5	공공청사	경찰파출소	증산동 169-11대 일대	695.0	-	695.0	서고 제2008-173호	
기정	6	공공청사	-	수색동 361-6대 일대	750.0	-	750.0	서고 제2016-134호	

② 문화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문화시설	수색동 358-10대 일대	1,631.6	-	1,631.6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③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증산동 212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80호 (75.02.21)	증산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일대	14,924.0	-	14,924.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50호 (82.02.03)	증산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일대	12,681.3	-	12,681.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제2008- 173호	연서중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수색동 129일대	18,403.4 (316.0)	-	18,403.4 (316.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9.01.10)	수색초

※ () 는 구역내 면적

④ 도서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도서관	수색동 21-1 일대	3,801.8	-	3,801.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8-10대 일대	1,358.0	-	1,358.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88-22대 일대	743.0	-	74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57-24대 일대	576.3	-	576.3	서울시고시 제2010-449호	
기정	5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4-2대일대	269.6	-	269.6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47.5	-	447.5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98.1	-	898.1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5)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없음)

라. 기 타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및 자세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마. 관련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바. 문 의 처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83)

[illegible]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

● 서울역(소문)

● 영등진(소문)

● 수색역(경의선)

● 디지털미디어시티(영등진)

● 디지털미디어시티(소문)

--- 재정비촉진지구계

--- 재정비촉진구역계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

수색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2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3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4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5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6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7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8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8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0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1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2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3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4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5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6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7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98동정비비촉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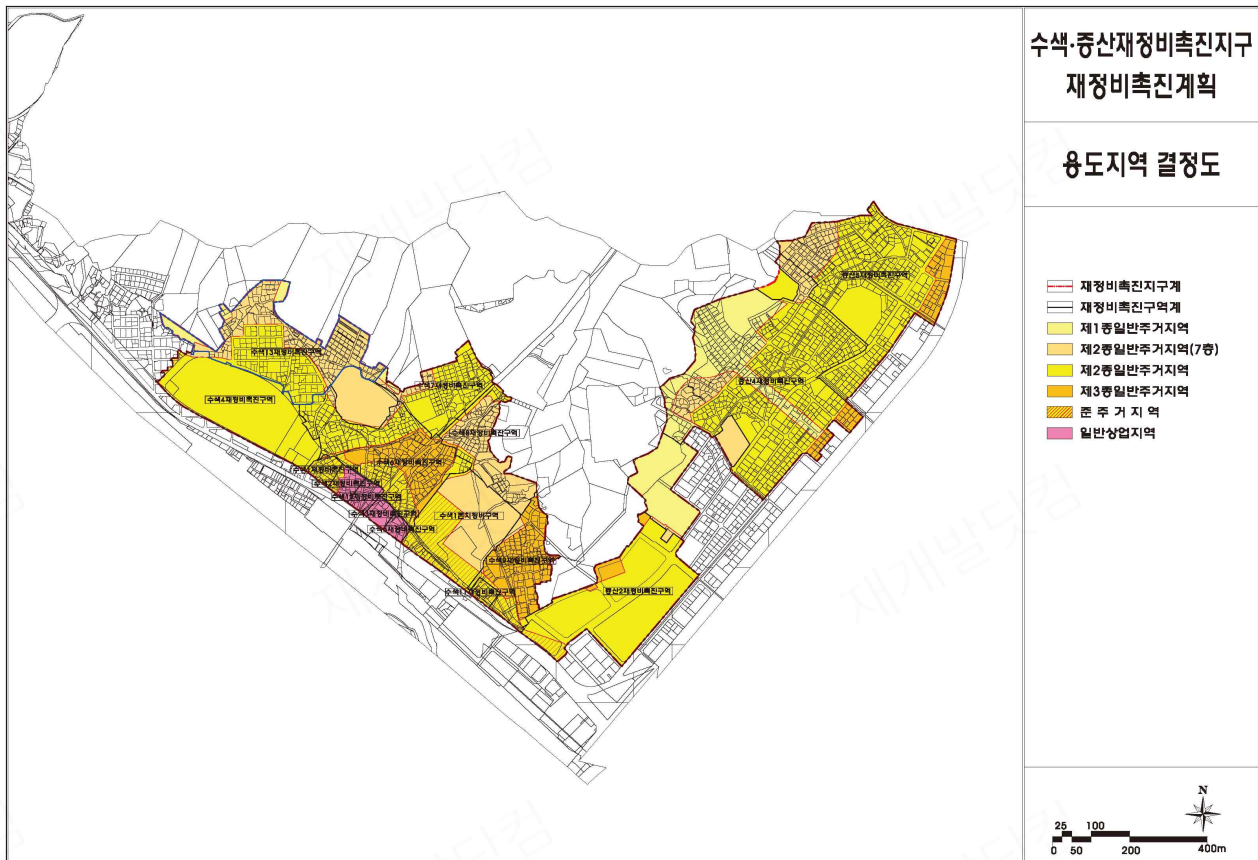
수색99동정비비촉진구역

수색100동정비비촉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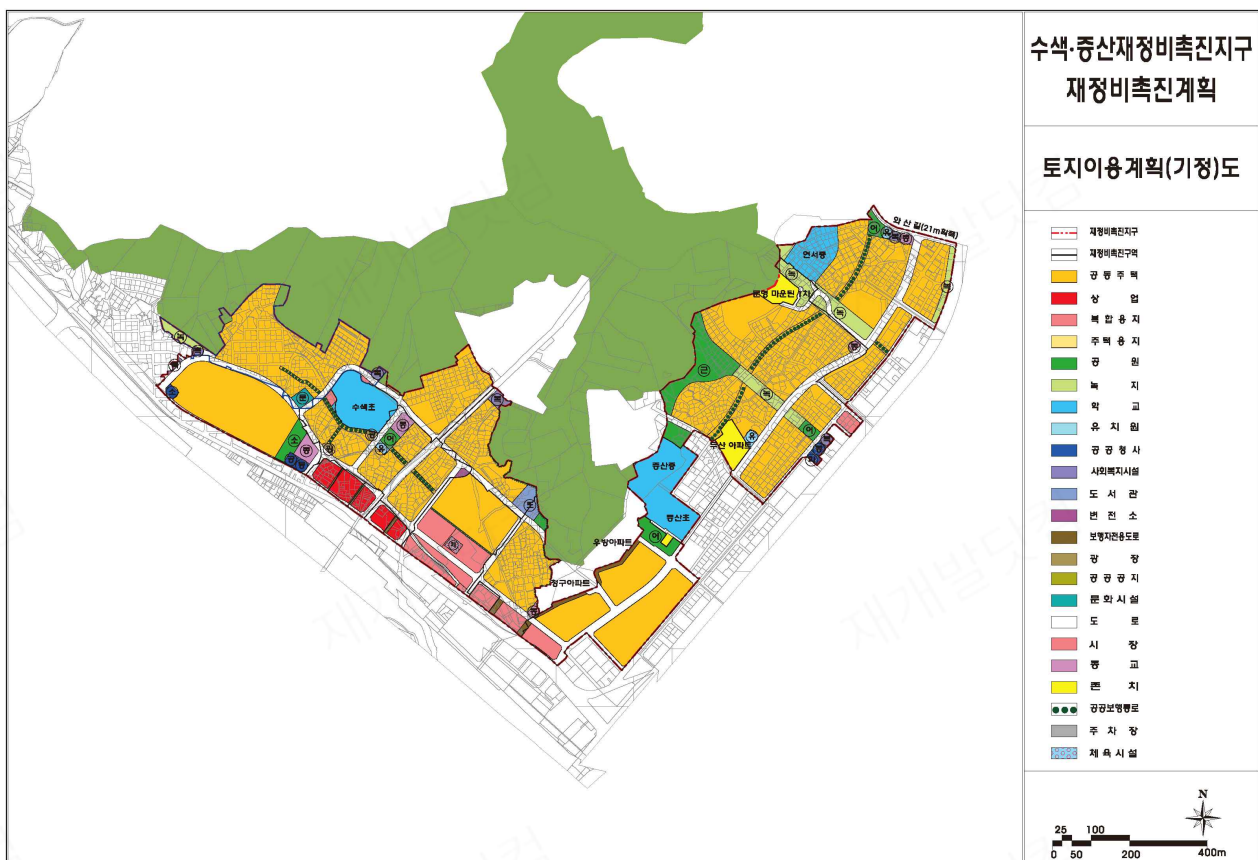
0 25 100 200 400m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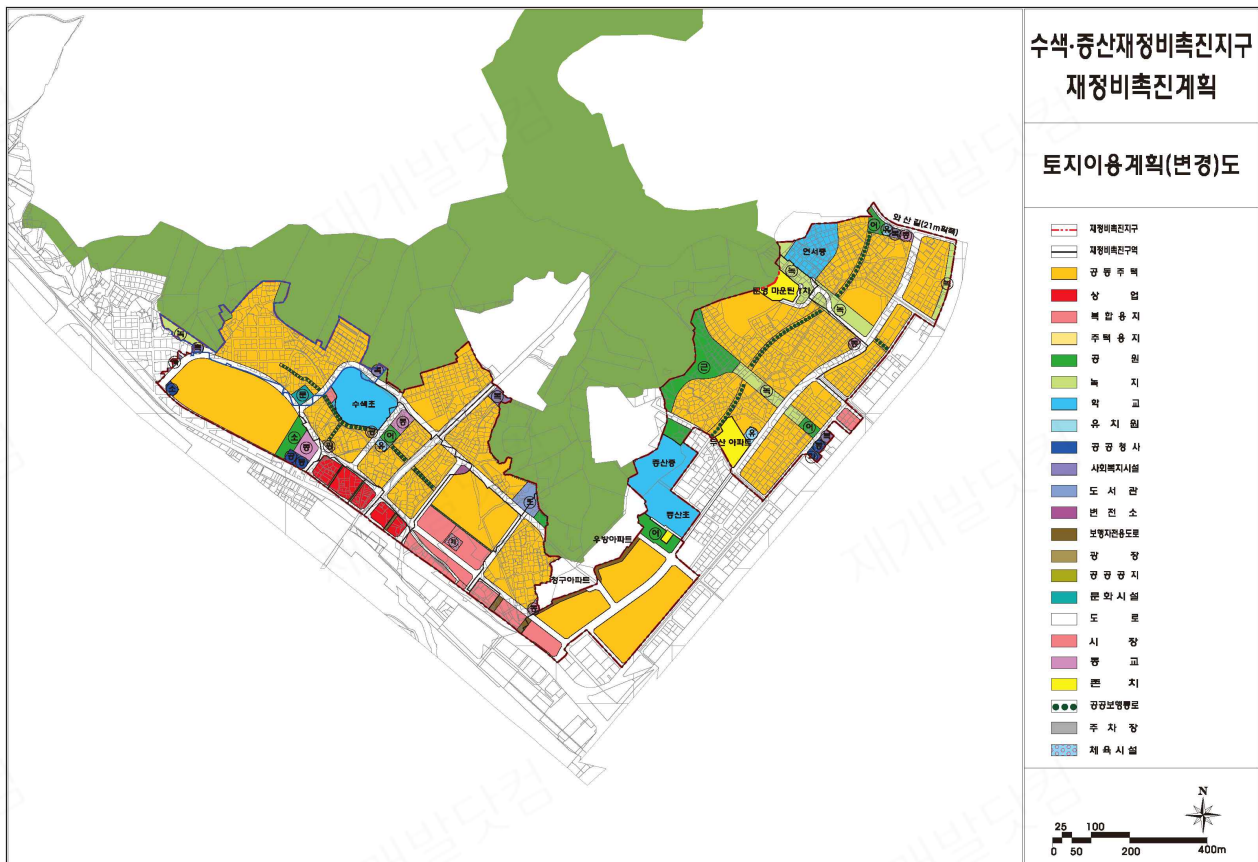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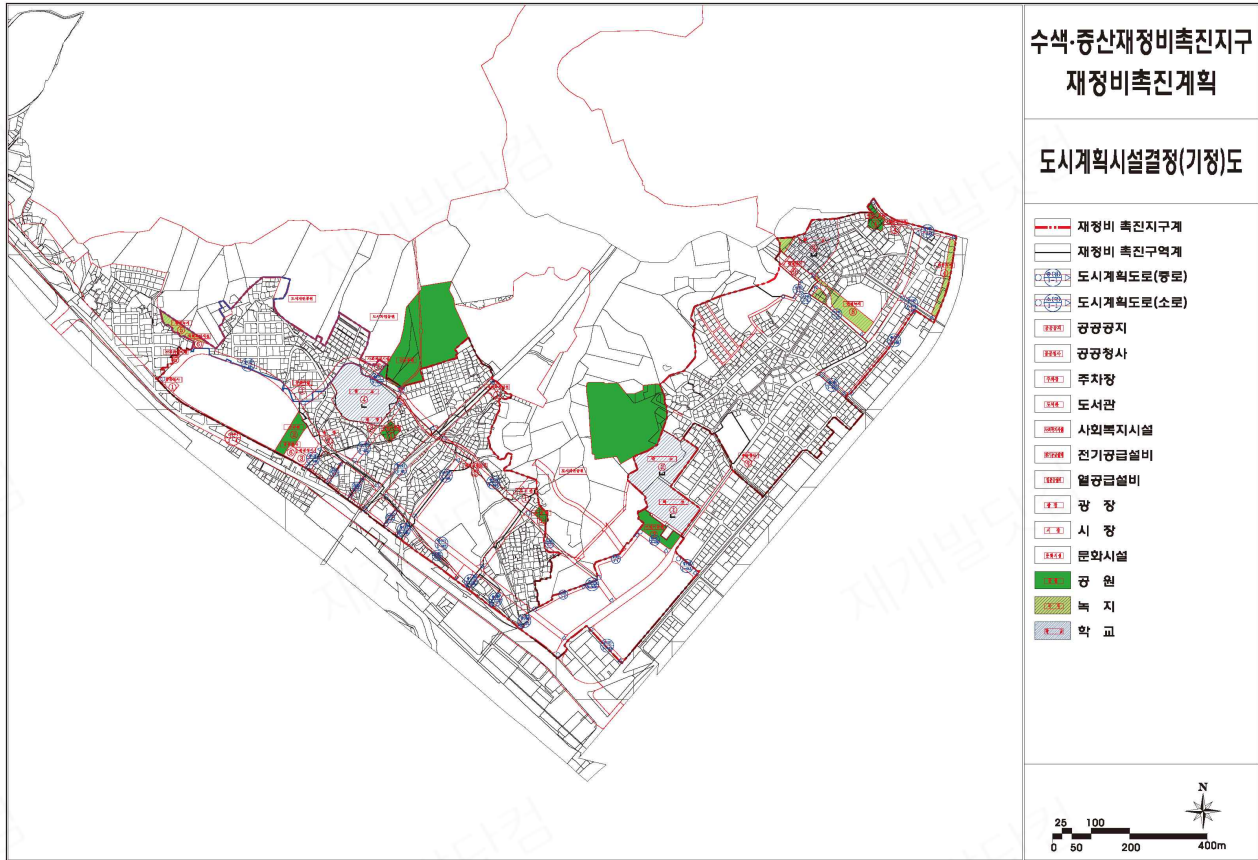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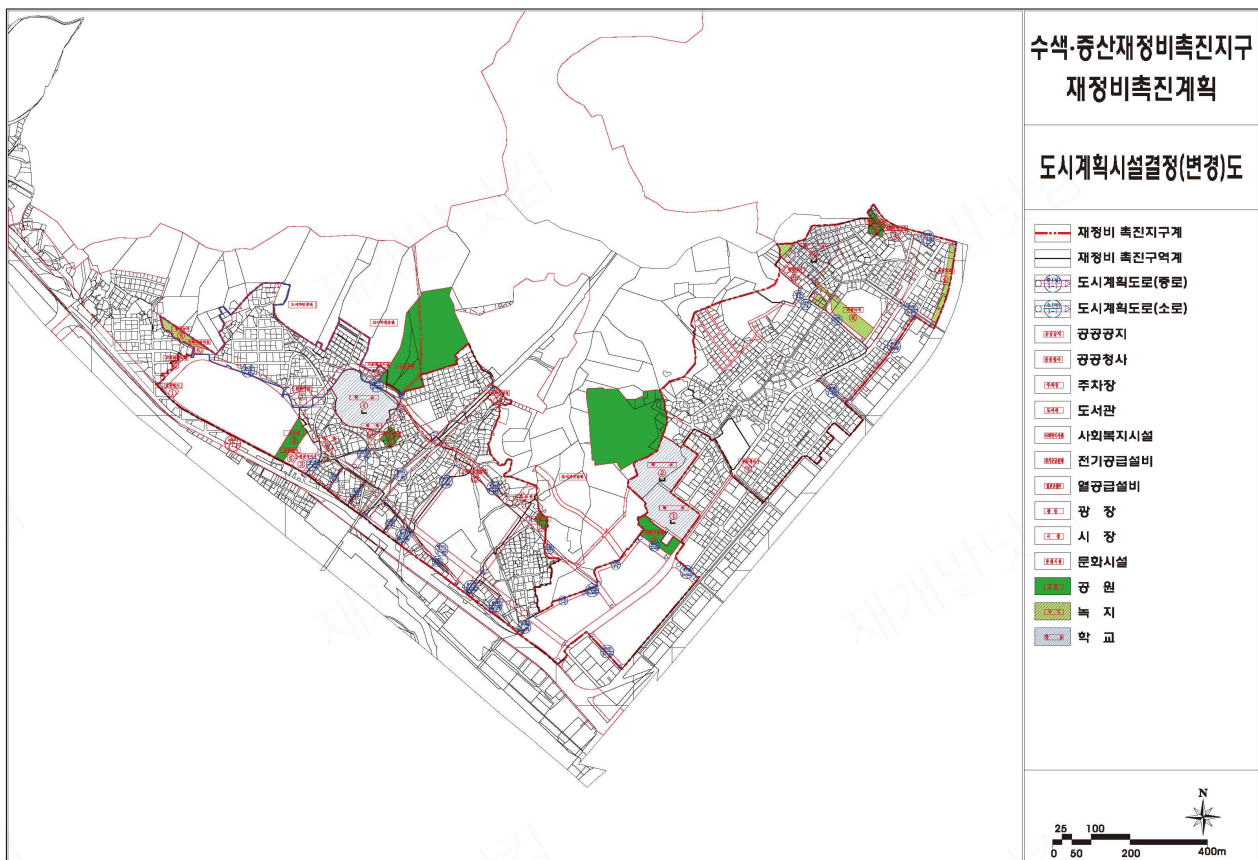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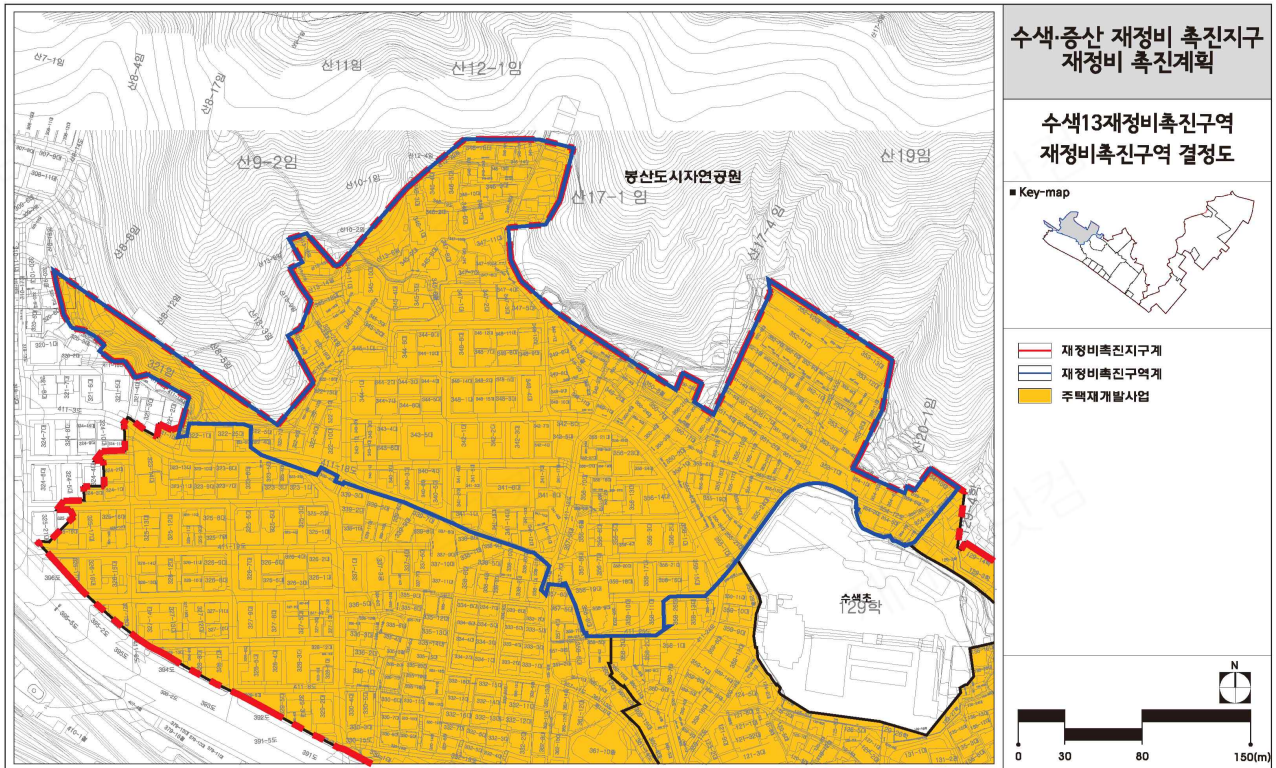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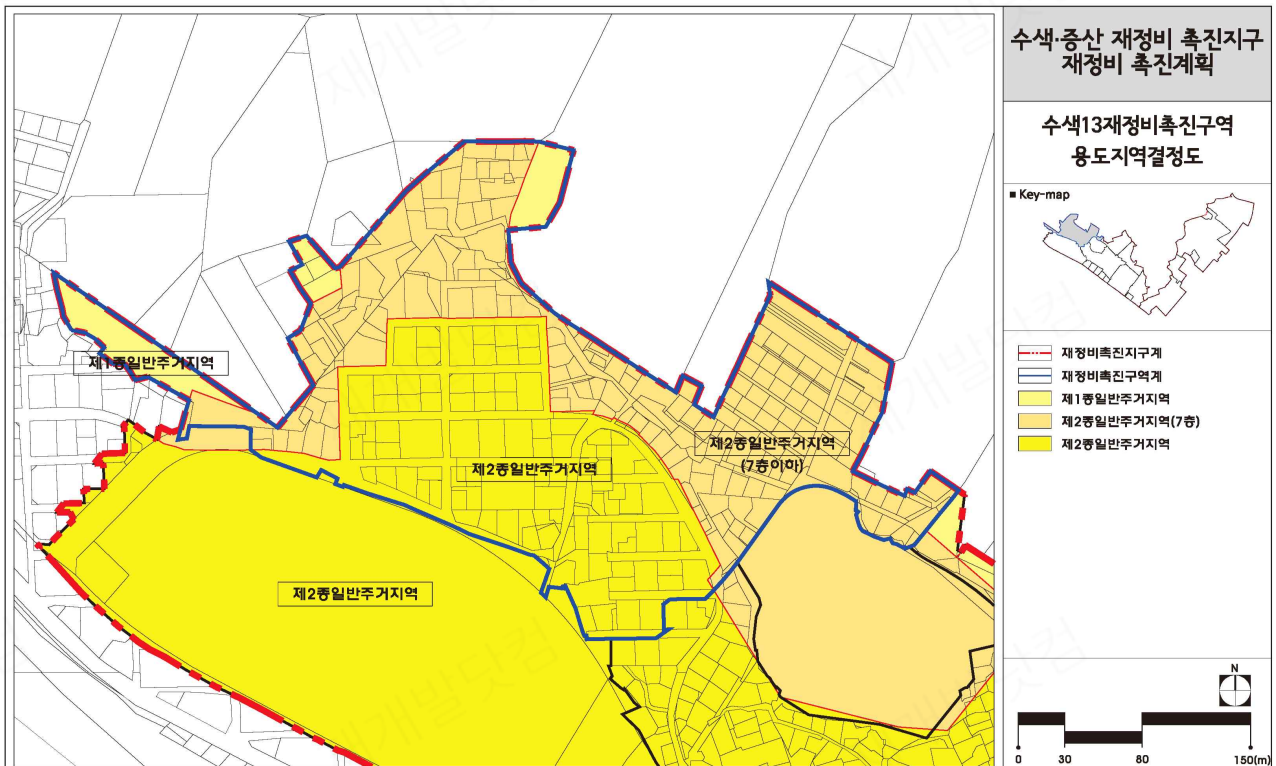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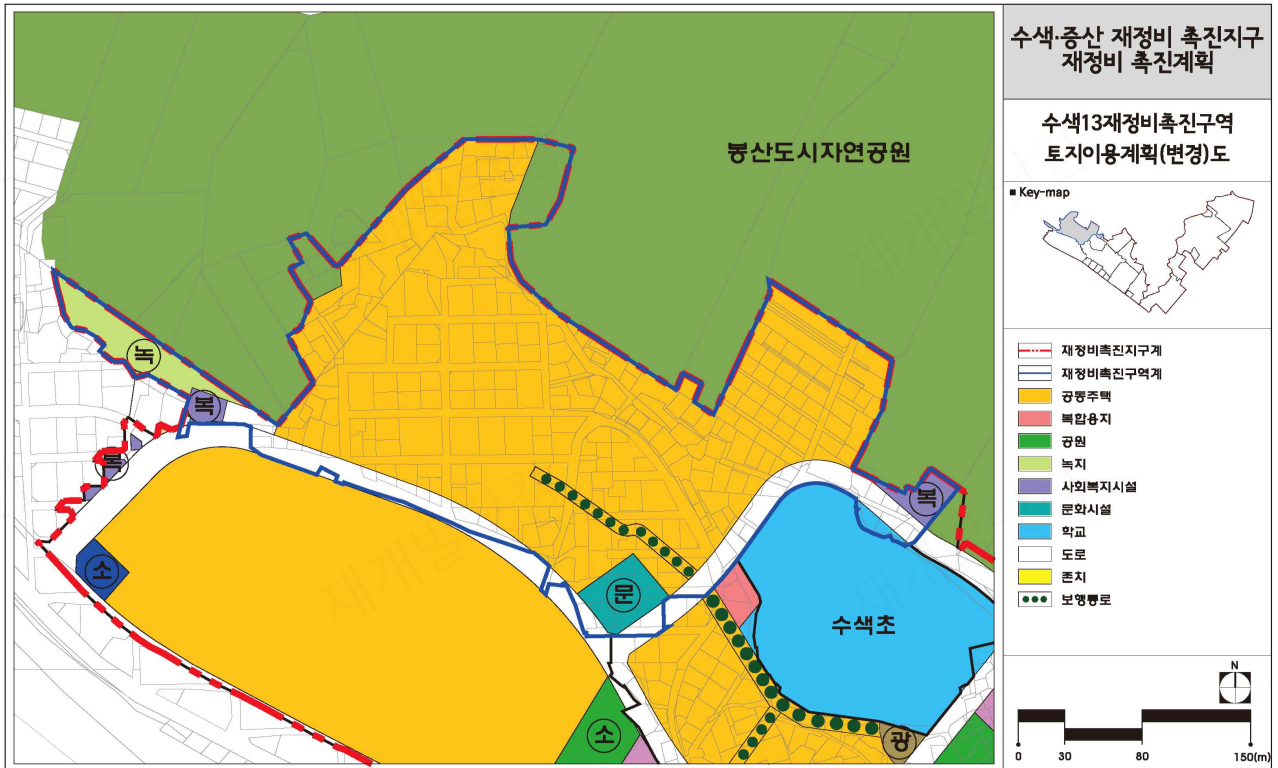
■ 수색13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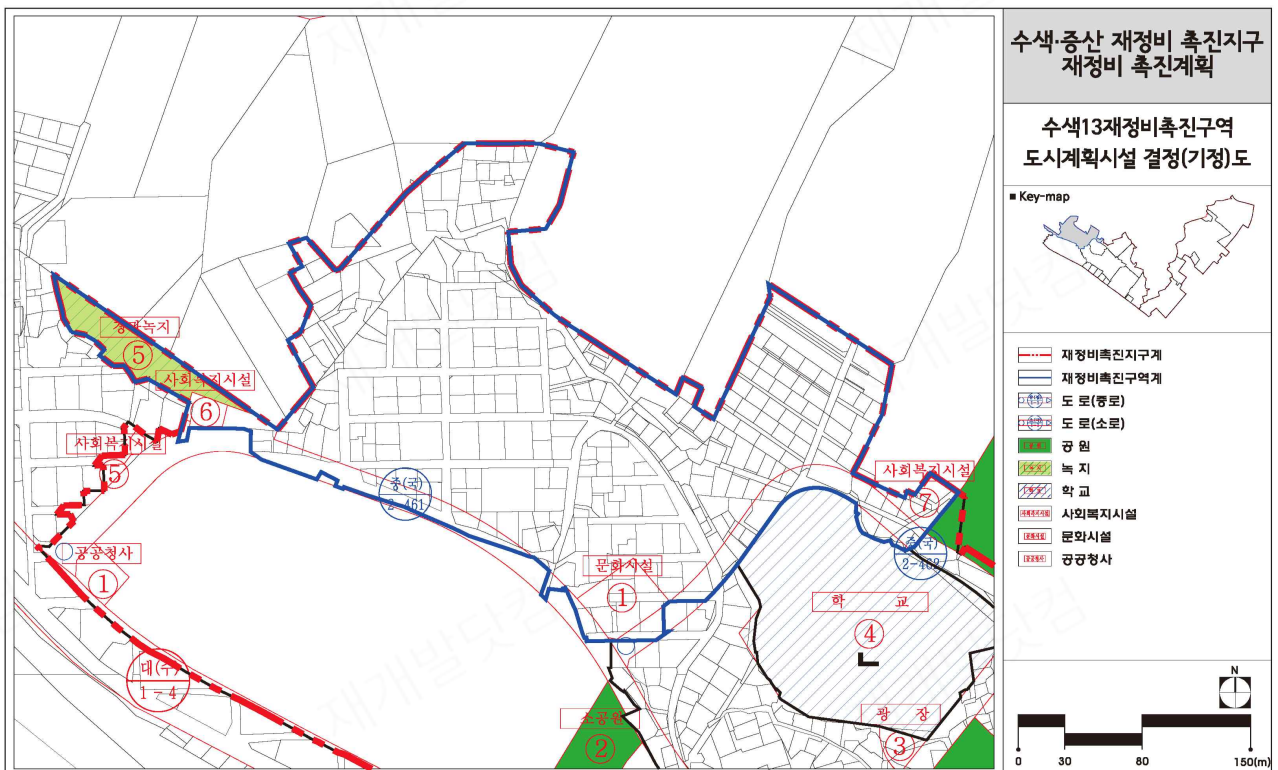
■ 수색13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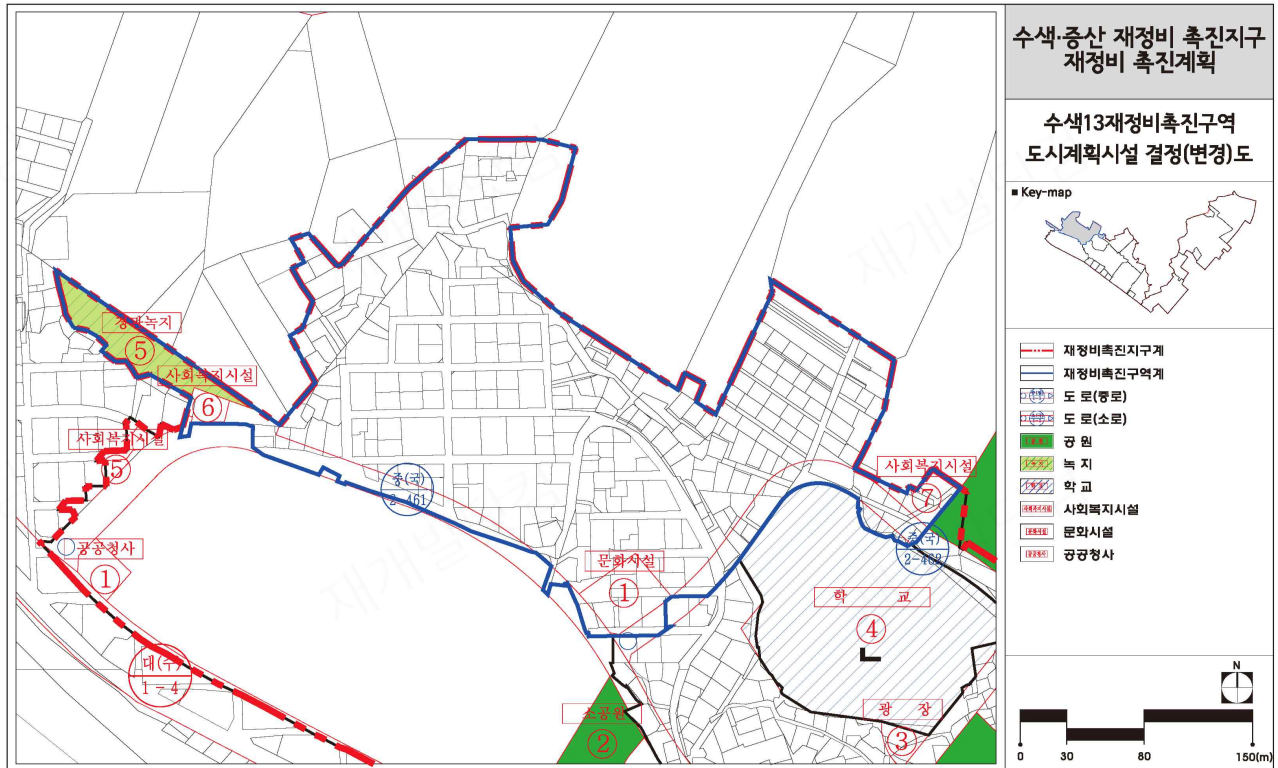
■ 수색13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수색13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수색1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 랐 의 견 서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2024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은평구청장 귀하

예 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규 제1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피해방지를”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3호) 가목 중 “등 성희롱·성폭력”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를 “징계, 정직, 감봉, 강등”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재배치, 직무 미부여”를 “미부여, 직무 재배치”로 하고, 같은 목 4) 중 “차별지급”을 “차별 지급”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근무 조건”을 “근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로,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로, “마련(2차 피해 포함)”을 “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무관용”을 “무관용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로 한다.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조제3항 중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을 “소속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였다고”를 “했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조해야 한다”를 “협조한다”로 한다.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의”를 “제2조제1항”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방지를”을 “예방을”로, “성희롱·성폭력 및”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제2조제1항의”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제2조제1항”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매년 성희롱·성폭력”으로,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2항)제3호 중 “2차”를 “2차 피해”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를 “성희롱·성폭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을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으
로, “매년”을 “매년 각”으로, “실시하되,”를 “실시하되”로, “대면 교육”을 “대
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1회 이상”을 “1회”로,
“관리자를 대상으로”를 “관리자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
·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
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구청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
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여성 공무원”을 “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제1호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를 “성희롱·성폭력·스토
킹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2차 피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을 “성희롱·성폭력·스토
킹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
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성희롱·성폭력”을 각각 “성희롱·성폭력·스토
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희롱·성폭력 및”을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및”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고충상담창구에는**”을 “**고충상담창구 내에**”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을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성희롱 · 성폭력**”을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사이버신고창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성희롱 · 성폭력**”을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충상담창구**”를 “**고충상담창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희롱 · 성폭력**”을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와**”를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과**”로,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 목격자 등**”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제1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한 제15조의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때 구청장이 행위자 일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마.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1항의”를 “제2조제1항”으로, “기관장과 구,”를 “기관의 장, 구, 제2조제1항 각 호의”로, “성희롱·성폭력”을 “성폭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 고충에”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

차 피해 고충에”로,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을 “피해자 등
은”으로, “온라인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
서”를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로, “필요한 경
우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감사청렴담당관에 조사를 의뢰해
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
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3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전의 제4항) 전단 중 “조사과정에서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을 “조사 과정에서
감사청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을 “위하
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5항) 중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
건 조사 시”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로 한다.

② 감사청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
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청렴담당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
폭력·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청렴담당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
·성폭력·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청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11조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청렴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고충상담원”을 “구청장, 고충상담원”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등에 대하여 이를”을 “등을 다른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4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사실 또는 제1항 및 제

6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3조제4호나목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스톱킹이 발생한 경우 스톱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⑩ 구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기관 내에서 스톱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성희롱·성폭력 사안의”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을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으로 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제17조제1항 중 “**포함하여 최소 6인 이상**”을 “**포함해 최소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족정책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은평구지부장, 성희롱 · 성폭력**”을 “**행정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3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성희롱 · 성폭력**”을 각각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성희롱 · 성폭력**”을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

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 제1항 전단 중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를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5조제1항,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비밀 유지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스토킹”으로, “2차 피해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사건”을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제출”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진단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신 요 청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성자 :
 확인자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직급)	0 0 0
연락처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시점	○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날짜 기재 (2024-00-00)
	○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4-00-00)
	○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유형	○ 사건발생기관명	
	○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
	○ 기관의 장애 의한 사건 여부	해당 ☐ 미해당 ☐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 , 2인 이상 ☐ 피해자(1인 ☐ , 2인 이상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 사제 ☐ 기타 ☐ ()
사건 유형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 (신고일 날짜 :)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보호 조치 사항	○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 아니요 ☐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 행위자 전보 ☐ 피해자 휴가 ☐ 기타 ☐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예 ☐ 아니요 ☐ 조치예정 ☐ - 심리상담 ☐ 의료지원 ☐ 법률지원 ☐ 외부기관 연계 ☐ 기타 ☐ ()

구분	내 용	응답값
주요 내용 (사건 신고· 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 (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3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건처리 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익명처리 동일)	

[별지 제5호서식]

조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중지 []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3.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5. 기타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 감사청렴담당관 귀중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중지 []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3.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5. 기타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
제
의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 결과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 ○○○○○○(기관명), '○○.○.○.(작성일)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통보 ☐ 미통보 ☐
	○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 착오, 누락 ☐ 기타 ☐ ()
시점	○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날짜 기재 (2024-00-00)
	○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4-00-00)
	○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건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유형	○ 사건발생기관명	
	○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 ☐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 미해당 ☐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 , 2인 이상 ☐) 피해자(1인 ☐ , 2인 이상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 사제 ☐ 기타 ☐ ()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여부	신고 ☐ (신고일 날짜 :)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 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24-00-00)
	○ 사건 조사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 30일 이내 ☐ 30일 초과 ☐ (일)
	○ 사건 조사 방식	기관(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외부전문가 조사 ☐ 상급기관 조사 ☐ 인권위 조사 ☐
	○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 미고지 ☐
	○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 미해당 ☐
사건 심의	○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 미개최 ☐ (사유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 불참 ☐ (사유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 불인정 ☐ 타비위 행위로 판단 ☐ 기타 ☐ (구체적 사항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인정 ☐ 불인정 ☐ 해당없음 ☐
	○ 이외 의결 내용(복수 체크 가능)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공간분리, 유급휴가, 배치전환 등 기재)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징계,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등) 2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 ☐ (구체적 사항 기재)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구체적 사항 기재)
후속 조치 *예정인 사항도 포함	○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행위자와 공간분리 ☐ 유·무급휴가 ☐ 심리상담 ☐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
	○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징계 ☐ 부서/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 (날짜 기재) 미수립 ☐	개선방안 있음 ☐ (계획 별첨) (세부 기재)
	○ 예방교육 실시/횟수	실시 ☐ (몇 회) 미실시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직원 참여율	90% 이상 ☐ 80~90% ☐ 70~80% ☐ 70% 미만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기관장 참여	참여 ☐ (총 0회 중 0회) 불참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고위직 참여율(%)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있음 ☐ (수립시기 기재) 없음 ☐	개선방안 있음 ☐ (지침 별첨) (세부 기재)
	○ 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 (여 0명, 남 0명) 미지정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 미이수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설치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 비상설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0명) (내부 0명, 외부 0명) (여성 0명, 남성 0명)	개선방안 있음 ☐ (세부 기재)
	○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징계 양정 강화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 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u>성희롱·성 폭력</u>을 예방하고 2차 <u>피해방지</u>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 법」 제3조제2호의 <u>규정</u>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생 략) <u><신 설></u>	<u>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 차 피해 방지 지침</u> 제1조(목적) ----- ----- ----- ----- 「여성 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 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u>성희롱·성폭력·스토 킹---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을</u> ----. 제3조(정의) ----- -----. 1. ----- -- <u>제3조제2호</u>----- -----. 2. (현행과 같음)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스톱킹 행위 및 같은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생략)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생략)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

가. -----

----- 등 -----

나. (현행과 같음)

다. -----

1) (현행과 같음)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3) ----- 미부여, 직무 재배치-----

4) -----

-----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
치

6) ~ 8) (생략)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
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
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
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
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5) -----

근무조건 -----

6) ~ 8)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 성희롱·성폭
력·스토킹 발생 -----
-----.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
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
차 피해 -- 마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자의 -----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무관용의 -----
6. ----- 성희롱·성

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생략)

<신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
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
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
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
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
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
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
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
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
다.

② (생략)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
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

폭력·스토킹 --

7.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8. (현행과 같음)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 성희롱·성
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
-----.

③ ----- 소속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
----- 했
다고 -----

-----.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발
생을 인지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
내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 략)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4. (생 략)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 8. (생 략)

제7조(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기관장이거나 팀장 이상 관리자급에 있는 자인

-- 협조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원의 책무)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

1. (현행과 같음)

2.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3.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6. ~ 8. (현행과 같음)

제7조(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 제2조제1항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예방을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
-----.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제2조제1항 --

<신 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2. (생략)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6.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
-----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 매
년 각 ----- 실시하되 -----
----- 대면교육-----

-----.

1. 2. (현행과 같음)
3. ----- 2차 피해 -----

4. 성희롱·성폭력 -----

5.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 1
회 ----- 관리자 대상 -----.

⑦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제>

⑧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9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삭 제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여성-----

-----.

④ -----
-----.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이버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사이버신고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②·③ (생략)

6.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 -----
-----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9조의2(사이버신고창구) ①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사이버신고창구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지원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9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고충상담창구의 -----
-----.

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
원하는 소속 구성원-----

-----.

② -----
- 경우 -----

-----.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제1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한 제15조의 보호조치 및 2차

<신 설>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
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
때 구청장이 행위자일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
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
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
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
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
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
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
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

제12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구청장,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기관장과 구,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구 또는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적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2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

② ----- 제2조제1항 -----
기관의 장, 구, 제2조제1항 각 호의 -----

성폭력 -----

-----.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
----- 피해자 등 ---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 신청서----

----- 감사청렴담당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

② 감사청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청렴담당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청렴담당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청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11조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

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 담당 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

-----.

⑥ 조사 과정에서 감사청렴담당관

-----.

----- 위하

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

-----.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청

렴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스

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

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

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

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3호다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치료지원과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부서가 원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신 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4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사실 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3조제4호나목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구청장, 고충상담원 -----
-----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

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등을 다른 사
람에게 -----.

⑥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
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
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
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
다.

⑦ 구청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
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
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
려해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
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
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⑩ 구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은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
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
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제15조(조사결과에의 보고 등) ① 고
충상담원 등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
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
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
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희
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
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
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
하지 않는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
해 포함)

<신 설>

수 있다.

<삭 제>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
능)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

-----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
회-----.

-----.

②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2. (생략)

3.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은평구지부장,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이 변경되어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은 타 부서장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삭제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
----- 포함해 최소 6명 -----
-----.

② -----
-- 행정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3명 -----

-----.

③ -----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⑤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신 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삭 제

④ (생 략)

<신 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 략)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 설>

-----.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위원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 경우 -----

-----.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

제21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

제21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3조제3호다목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징계) ① ----- 성희롱·성폭력·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

-----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② -----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5조제1항,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비밀유지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물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 · 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정보, 사건 발생 기관 · 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다.

④ -----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 · 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 재발방

<신 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진단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⑦ -----
----- 성희롱·성폭력 사건-----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출-----.
-- 구청장-----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여성가족부 시정조치 통보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여성가족부)’ 내용 반영
-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7.18.시행)」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스톱킹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2. 주요내용

-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내용 반영
- 1)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신뢰관계인 동석 기회 제공(제13조)
 - 2) 조사기간, 조사결과 등 시점을 구분하여 피해자보호 관련 규정 확립(제15조)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고충심의위원회 필수 경유(제19조)
 - 4)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 의무 규정 등 재발방지조치 내용 보완(제23조)
 - 5)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서식)
-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스톱킹 예방 내용 추가
- 1)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2) 스톱킹 예방교육, 고충상담,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종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 3) 스톱킹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제15조)